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기념 제1회 정책워크숍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일 시 : 2007년 3월 28일 오후 2시

장 소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주·여성인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기념 제1회 정책워크숍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일 시 : 2007년 3월 28일 오후 2시

장 소 : 가톨릭 대학원

이주·여성인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도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고하고...” 이상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중의 내용이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헌법 제 6조 제 2항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구조에 노출되어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기준법도 못박고 있으나 현실의 조건은 그렇지 아니다. ILO의 이주노동자 협약 제 97호 6조 1항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가맹국은 그 지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입 이주자에게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처우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균등처우의 원칙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현실은 각종 국제 규정과 법이 정해 놓은 조항들의 내용과 거리가 멀며 안타깝게도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 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 남성과 여성, 중국동포와 기타 외국인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들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위계적으로 성층화’되어 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의 실현, 즉 죽은 문자나 자료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인류가 합의하여 만들어 낸 각종 조약과 문서들이 살아 움직이는 ‘보장’의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세상을 그려낸다. 그것이 인간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을 때,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수정과 폐기를 할 수 있는 소박한 행동들 우리는 그런 것을 꿈꾼다. 버려져야 할 것들은 바로 차별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조직적 거대한 힘이 나약한 존재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

이주노동자로서, 게다가 여성으로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을 남편으로 맞는 것은, 그것도 가난한 나라 출신의 남자를 남편을 맞으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큰 사람들, 이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주·여성인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이 가족과 그 자녀들이 자라 한국사회에서 함께 편안하게 숨쉬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함께 하기' 그 첫 번째 행동으로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만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아울러 국제 결혼한 가족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1년 3월 28일
창립기념 제1회 정책 워크숍을 열면서

이주·여성 인권연대

안양 전·진·상 복지관 관장 이금연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모경순
부산 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 목 차

시작 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발제문

이주노동자의 현실 - 여성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3

국제결혼가정의 현실과 문제

이금연,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11

토론자

차경환 / 법무부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위원회 위원

이철순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발족문

이주여성인권연대를 발족하며 43

참고자료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건의 공문 4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63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실

— 여성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한국의 이주노동 과거 그리고 현재

한국은 과거에 이주나 이주노동에 생소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꽤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한말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남미의 커피농장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었으며, 일제침략 이후 탄압을 못 이겨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해 간 동포들이 지금도 조선족, 고려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깝게는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가 파견되어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 근대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일본에서 한국인이 불법체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이다.

지난 날 대표적인 인력송출국가였던 한국은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 부족 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라는 이름 하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3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¹⁾

특히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의 방안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정책은 결국 유보되고,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주노동자 전체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이주노동자 전체의 인권문제 보다는 거주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이주노동자의 체류현황, 출처; 법무부

전체	합법체류자					미등록노동자
	소계	합법노동자		산업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업종별단체 추천연수생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258,866 (100.0)	92,968 (35.9)	14,669 (5.6)	772 (2.9)	57,645 (22.3)	19,882 (7.7)	165,898 (64.1)

2000. 7월 현재 / (단위 : 명, %)

거주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체류는 적응기 혹은 한국사회 정착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주자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가정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는 숏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그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발제에서 다루기로 하자.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정체성 상실 및 이주노동의 반복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작업장에서의 일이 익숙해지는 것 뿐 아니라 한국어, 한국음식, 한국생활 등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왕성하게 일할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익히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치 한국에 처음 와서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 사회에 정착하여 뿌리내리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다시 이주노동을 반복하게 된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과 문화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 역시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가족의 해체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력정책은 '단기로테이션'으로 이주노동자의 단신노동만 허용할 뿐, 가족들의 방문이나 동거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깨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본국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도 가족 속에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여 일과 문화에 충분히 적응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장기노동허가 등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와 권리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일을 하는 동안 귀국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귀환프로그램 혹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중 여성의 비율은 약 30.5%이며, 아시아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38.9%이다. 한국에 체류 중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유입돼서 일하는 업종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생산직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과 유흥산업(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와 영어권의 학원 강사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생산직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출신이며,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는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이 그 대부분이다. 그리고 식당이나 여관, 다방 그리고 가정부 등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이다. 여기서는 우선 생산직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제기 수준에서 살펴보자.

표6)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법무부 1999 통계자료

	전체	아시아주계	북아메리카주계	남아메리카주계	유럽주계	오세아니아주계	아프리카주계
남성	126,436	101,605	16,345	1,170	4,314	992	1,897
여성	64,618	64,618	14,127	844	3,837	871	281
전체	211,151	166,223	30,481	2,014	8,151	1,863	2,178

1. 생산직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

생산직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특히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몽고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순이다.

표7) 아시아주계 국적별 체류자 현황, 출처: 법무부 1999 통계자료

	한국계중국	중국	몽골	필리핀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성	22,916	17,495	6,591	6,244	5,999	2,515	3,583
여성	23,815	13,055	4,839	4,276	3,755	1,114	855
전체	46,731	30,550	11,430	10,520	9,754	3,629	4,438

생산직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1995년 노동부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²⁾만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5년 2월 14일 노동부 예규 제258호)

제8조 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등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야업금지조항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69조 시간외 근로조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1조 생리휴가조항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은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① 장시간노동

여성이주노동자는 섬유, 봉제, 수산물 가공업 등 단순하지만 장시간노동을 요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섬유업체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아래 2교대 혹은 3교대로 일하게 되는데, 2교대의 경우 주야 12시간씩, 3교대의 경우 8시간씩 돌아가지만 잔업이라는 이름으로 16시간을 일하는 경우와 휴일에도 작업을 요구하는 업체가 다수이다. 이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업종들은 지난 날 산업체부설학교로 모집된 나이 어린 여공들의 빈자리를 이제 여성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① 감금노동

많은 연수업체에서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와 전화, 서신교환, 방문, 외출 등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밤에는 문을 밖에서 잠그는 사실상의 감금상태의 노동을 시킨 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연수생,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가 많으며, 상담소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1

경북구미의 S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연수생들은 회사에서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외출통제는 물론이고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숙사방문을 밖에서 잠가두었다. 이 사실은 연수생들의 외출을 철저히 통제된 까닭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알려졌고, 상담소와 노동부를 통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직접·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 ②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사례2

부산 D업체는 중국현지회사를 통해 연수생 12명이 일하고 있었고, 회사는 중국의 집을 담보로 하고 이탈시 집을 압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출 시에도 반드시 짝을 지워 내보내며 한 명이 이탈하면 나머지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뿐 만 아니라 건물 7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밖으로 못나가도록 잠가두었다.

① 작업장내의 성희롱

지난 해 작업장 내의 성희롱을 방지하는 성희롱방지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그 사실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문제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례1

양산의 B업체에서 일하던 그레이스(필리핀 여성)는 사장이 가끔씩 작업 중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기도 하고, 밤중에 사장이 술에 취해 기숙사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두려워했다. 상담을 받아 사장과 얘기하였을 때, 사장은 “아이가 착하고 예뻐서 귀여워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정리됐지만, 그 후 그레이스는 연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했다.

■사례2

부산 사상 J업체에서 일하던 야얏(인도네시아 여성)은 작업라인의 관리자가 오가며 자신의 어깨, 엉덩이 등 신체를 자주 만졌다.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서툰 한국말로는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연수생의 외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문제로 상담소에서 노동부에 진정할 당시 관리자의 신체접촉을 함께 문제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받았다.

① 성폭행

회사 내의 기숙사나 회사 밖의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인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밤에 기숙사에 진입을 시도하여 물의를 빚은 상담도 적지 않았다. 짐작컨대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행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그 사실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① 건강과 의료(임신 등)

연수생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검진이 이루어지는 업체가 거의 없으며, 미등록노동자의 경우는 의료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신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기 때문에 부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고, 또 중절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경우는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유흥산업(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

한국의 유흥산업에 이주여성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의 일이다. 이주여성들은 주로 미군부대 주변의 클럽과 전국 나이트 클럽에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는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하여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비자)으로 입국하는데, 특히 1997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연예인 도입업무를 맡는 송출에이전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현황

예술홍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의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29%)과 러시아(52.3%)가 압도적인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8 예술홍행입국자 수, 출입국관리현황(1994~98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전체예술홍행	649명	1009명	1550명	2211명	2150명	4,486명

<표9 1999년 말 예술홍행 체류자 성별·국적별 현황>

국적별	성별	남성	여성	계
전체		195명	803명	998명
아시아주계		121명	342명	463명
필리핀		105명	233명(29.0%)	338명
유럽주계		52명	452명	504명
러시아		22명	421명(52.3%)	443명

● 문제점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문제는 매춘과 인신매매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단지 클럽 등의 유흥업소 뿐 아니라, 주택가의 깊숙한 곳에 감금생활을 하며 매춘에 시달렸던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다. 이들의 도입과 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방치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마치며

현재 한국여성들 역시 심각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이주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에서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권리보호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기서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현실을 포함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활동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과 문제

이금연, 안양 전·진·상 복지관 관장

세계인권선언문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16조)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여 정착하기에는 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다.

'체류'라는 일시적 개념에서 벗어나 한 사회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는 상태'를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 도구로서가 아니라 한국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이주민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특히 불평등한 법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현실 앞에 이들이 안전하게, 전인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주어지면 안 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 국내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

<표1> 연도별 현황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건)	6,431	15,860	13,231	12,206	9,507
A 커플	3,096	12,827	10,286	9,331	6,320
B 커플	3,335	3,033	2,945	2,875	3,187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9년 발간)

*A 한국남자 + 외국여자 *B 한국여자 + 외국남자

<표2> 국적별 현황 (1998년)

국적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계 (건)	2,205	4,515	1,638	1,149
A	619	4,170	925	606
B	1,586	345	713	543

*기타국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98년 한국남자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중은 2.1%(남자 총 혼인대비)로

한국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1.0%(여자 총 혼인 대비)보다 2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남자가 중국여자와 결혼한 비중은 1.4%이며

*한국여자가 일본 남자와 결혼한 비중은 0.5%로 나타남

<표 3> 외국인과의 결혼 추이 (단위 : 건) 법무부 1999

연도	한국남자 + 외국여자 (A)					한국여자 + 외국남자 (B)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1989	723	293	91	239	100	4,031	1,432	107	2,230	262
1990	653	197	99	245	112	4,138	1,788	118	1,938	294
1991	739	211	203	208	117	3,819	1,958	144	1,474	243
1992	2,800	1,725	654	219	202	3,652	1,969	169	1,261	253
1993	2,673	354	1,924	202	193	3,241	1,690	147	1,106	298
1994	3,096	463	2,181	204	248	3,335	1,869	152	1,008	306
1995	12,827	2,636	9,550	171	470	3,033	1,721	198	814	300
1996	10,286	1,110	8,292	209	675	2,945	1,576	143	873	353
1997	9,331	755	7,304	683	589	2,875	1,431	203	785	456
1998	6,320	619	4,170	925	606	3,187	1,586	345	713	543

이 통계를 보면 기타 국가의 결혼 건수는 매년 증가함을 보여준다. 법무부 체류심사과는 기타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많은 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로 해석하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실혼에 있다하더라도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든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2. 문제점

본 발제에서 국제결혼가족이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혹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들과 국내 남성들이 혼인을 위하여 외국인 아내를 맞아들인 가족들로 한정한다.

상담사례를 통하여 정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2.1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가족의 문제

1) 혼인신고

2) 미등록 이주노동자 들에게 출국 시 부과되는 벌금

3) 벌금부과로 불법체류의 장기화에 따른 체념

4)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출국 시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및 재 입국의 어려움

5) 자녀 교육 및 탁아

6) 건강 및 의료

7)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8) 교육받을 기회의 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9) 부적응에 따른 사회심리적인 문제

1) 혼인신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일단 체류사증이 없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례1

로매스씨는 한국인 은영씨를 만나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위하여 구청에 갔으나 불법체류자 이기에 불가능 하여 혼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재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하여 귀국하였으나 불법 체류한 사실로 인하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안하여 부인 은영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나라로 갔다. 거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받고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2), 3)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 그리고 장기체류

일단 '불법체류'라는 죄목이 주어지면 벌금을 물어야 출국할 수 있다. 혼인을 하여 신고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벌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루다 보면 혼인신고가 늦어지고 아이들은 자라고... 체류를 장기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면기간을 활용하여 귀국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실업을 감수해야 한다.

사례2

혼인 신고를 위하여 귀국하려던 모노즈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출입국관리국의 판정에 따라 귀국을 포기하였다. 부인 회경씨는 가정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포자기 하고 있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현재 자신도 반실업 상태에 있으므로 벌금 500만원과 귀국여비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아무 사고 없이 꼬박 저축을 해야 가능하므로 벌금 사면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4) 출국 시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및 재 입국의 어려움

사례3

가네스씨는 1992년 한국인 재숙씨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다. 당시 임시로 연장되던(당 시에는 등록을 받아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다)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자 귀국 하였다. 그러나 왜 일인지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여 이산가족인체로 몇 년이 흘렀다. 계속 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한국대사관에서 이유도 없이 거절하여 가네스씨와 부인은 각각 재혼하 였으며 아들은 이들 부부의 아들은 이사실을 모른채 자라고 있다. 가네스씨는 아들을 자신 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지만 역시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5) 자녀 교육 및 탁아

사례4

디팍구릉씨와 장은주씨는 큰딸 진을 네팔에 두고 왔다. 작은 아이를 기르기도 벅차 고향에 두고 온 것이다. 장은주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작은 아들을 돌보다 탁아소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였다. 6년이 지난 올해 네팔 시부모님께 맡긴 딸을 데리고 왔으나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말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아들과 딸은 서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같이 지내는데 한계가 많다. 맞벌이를 하는 두사람은 작은 아들의 탁아비와 한국 말을 모르는 큰 딸의 유치원 비용으로 지출이 큰데다 밤늦게 돌아와 아이들의 돌보아야 하 기 때문에 순조롭게 말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6) 건강 및 의료

대부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체류자들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으로 직업병 및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소위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은 모든 사회적인 혜택으로 부터 멀어짐을 말한다. 최근 외노협산하 의료공제회를 활용하기도 하나 이는 최소한의 위로의 상 징일 뿐이다.

사례5

니마씨는 한국 생활 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번돈은 모두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였고, 3년 전에 결혼한 부인과 월세방에 살고 있다. 한 두달 전부터 배가 아파 소화불량인줄 알고 계속 소화제를 복용하였다. 그러다 증상이 심하여 병원진료를 하였는데 만성 신부전증에 간 경화가 겹쳐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다. 두사람 모두 치료를 위하여 실직 인 상태이며 수입이 거의 없는 이들은 진료비와 생활비의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다. 부인 수현씨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활의 유지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사례6

비노드씨는 머리 피부가 상하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 도장공인 비노드씨는 마스크를 하고 일하지만 머리부분으로 스며드는 스프레이 도장 물질을 막을 길이 없다. 머리속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지만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앞선다. 의료공제회원이기는 하나 큰 도움은 못되고 있다.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을 어 떻게해야 하는지...

7)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일자리 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늘 불안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미등록이기에 기본 임금부 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언제 추방당할 지 모르기에 불안하며 원치 않는 가족의 해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장기간 일해도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 수입은 늘 불안정하다.

8) 교육받을 기회의 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9) 부적응에 따른 사회심리적인 문제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은 지난 12월 네팔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것을 참고로 하면, 이들 가족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든 항목은 경제와 비자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비중을 크게 차지 하였다. 남편들은 대 부분 일정기간이 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반면 한국 여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싶 다. 완전하게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살던 관습과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의 불편 함 늘 있기 마련이다.

2.2 F-1 비자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가족의 문제

F-1 비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자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로서 거주(F-2)자격을 부여받지 못한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F-2 비자란?

'거주'의 비자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 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 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1) '무직'이라는 외국인 등록증의 기록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임시 방문 동거 비자인 F-1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가량 체류할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등록증에 직업란에는 '무직'으로 기록된다. 이 '무직'이라는 말이 주는 마음의 고통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호소한다.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 아빠로서의 역할을 자신 있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깊은 원인이 되고 있다.

2) 취업 시 '불법취업자'가 되는 데 따른 어려움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출국비용을 들여 F-1비자를 받아 돌아오면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불법 취업자'가 된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취업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쓸 수 있는 직종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내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 '무직'이라는 직업란의 표시에 따라 다된 직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비자연장의 어려움

F-1 비자를 받으면 종전과 같이 출국하여 받아오지 않아도 최소한 연장을 해주고 는 있으나 쉽지는 않다.

4) 경제불안정

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안정이 안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5) 건강 및 의료

F-1비를 지닌 이주노동자들은 아내의 의료보험에 함께 등록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체류자격의 불안함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전하다.

6) 자녀교육 및 탁아, 아이들 호적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다름 바 없다.

사례7

김동숙씨는 결혼 하여 아이들 둘을 낳아 미혼모가 되었다. '혼인외 자'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

던 아이들은 혼인신고 후 남편의 국적이 네팔이어서 동숙씨의 남동생의 호적으로 세 딸이 올라가게 되었다. 동숙씨와 남편 바닷씨는 아이들에게 서류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7) 임시체류·방문·동거 비자(F-1)에 따른 가정으로서의 심리적 위축(1번으로 대체)

8) 귀화의 어려움

F-1 비자로는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모든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다. 어떤 권리도 자격도 주어지지않아 귀화를 생각해보지만 사실은 이주노동자들은 귀화를 그리 원하지 않는다.

사례8

라마 구름씨는 귀화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 시험 문제지를 구입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태극기의 의미부터 한국의 간단한 역사를 묻는 시험 문제를 공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함께 귀화를 준비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친구들과 그룹 스터디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문제이다. 대부분 휴일에도 근로하는 까닭에 같이 모이기도 쉽지 않다.

9)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및 사회권의 부재

사회교육에 참가할 기회나 시간적 여유 갖기와 언어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안양의 NE-CO모임에 나오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여성들의 경우 거의 사회교육의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 TV를 통하여 배우자의 나라에 대하여 정보를 갖게되며 체계적인 문화의 이해와 예절, 전통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접근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10) 이혼 및 가족간의 갈등

가정폭력이나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어떤 조사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2.3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문제

이들의 경우 거주비자인 F-2가 주어지기 때문에 남성 외국인에 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일단 살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한국인 남성들의 알콜릭 및 직업 불안정으로 생활을 위협 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례9

중국동포인 순희씨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알콜 중독자인 것을 알게되었다. 일정한 직

업도 없이 술로 연명하는 남편은 성폭력등 폭행을 일삼아 임시 피난처에 대피하여 이혼을 청구하려 하나, 위장결혼으로 오해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선 결혼에 대한 실패감으로 스스로 어려워 남편과의 생활을 여러번 시도해 보았으나, 학대가 더욱 심해 다시 피난해야 했다.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응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별거중이다.

사례10

필리핀 여성 펠리는 경북 밀양에 사는 남성과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낳자마자 의처증이 시작되어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장하며 아내구타를 시작하였다. 성폭행도 일삼는 남편을 피하여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필리핀 수녀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생활불능자에 알콜릭 그리고 상습적인 구타로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하고 살 수 없다는 판단아래 펠리는 쉼자리에 3개월간 지내다 필리핀으로 귀국하였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결혼한 가족들의 권리를 위하여 몇 가지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다.

3.1 지구촌 사랑나눔터

‘지구촌 사랑나눔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현 제도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인종과 종교를 넘어선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아래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여러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1998년 결성하여 회보를 발행하는 등 일정기간 활발히 움직였다.

‘지구촌사랑나눔터’(이하 자사나)의 주요 활동 과정

- 1998. 5. 10 경북궁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첫 만남
- 1998. 6. 28 서울대공원에서 두 번째 준비모임
- 1998. 7. 25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 모여 이름을 ‘지구촌사랑나눔터’로 정함
- 1998. 8. 23 건국대학교사회교육원에서 1차 정기모임을 가짐
- 1998. 9. 27 건국대학교사회교육원에서 2차 정기모임을 가짐
- 1998.10. 18 3차 모임과 첫 소식지 발행
- 1998.12. 27 안양 전.진.상복지관에서 5차 정기모임
- 2000년 4월 정기모임을 갖고, 소식지를 발행 이어짐
- 2000년 9월 현재 활동 중지됨

소식지에 실린 소개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촌사랑 나눔터(지사나)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터에서는 배우자의 비자연장에 관한 정보교화, 신국적법 내용 공부, 자녀들의 교육, 의료문제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입니다’

3.2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가족대책위원회

2000년 4월 16일 지사나 회원들과 정금자씨가 결성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짧은 기간 집회와 탄원작업을 하면서 일정정도 성과를 가둘 수 있었다. 즉 입국규제 완화, 강제 추방의 완화, F-1비자연장의 가능 등, 다음은 탄원서를 통한 이 단체의 주장 내용이다.

- 단속과 강제추방의 고통으로 벗어나고 싶습니다. 혼인 신고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등록체류 가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F-2 비자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분제 체류심사 너무 가혹합니다. 3천만원 경제적 능력 입증 서류 철폐하여 주십시오.
-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국제 결혼한 가정에 F-2비자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 단기체류 비자로 살 수 없습니다. 장기체류 허가하여 주십시오.
-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취업불허 비자 정책 철폐해주십시오.
- 아빠가 있는데 미혼모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 국제 결혼한 가정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3.3 각 상담단체별 국제결혼가정 모임

-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02- 3672-9472 담당 최진영)
- 부산외국인 인권을 위한 모임 (051-802-3438 담당 강은경)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031-492-8785 담당 김영임)
-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031-443-2876 담당 이순희)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565-2816 모경순)

4. 제언

-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의 설치를 통한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로 노동권 및 사회권 보장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 하여 국민의 '부'에게도 F-2 비자 발급 하거나, 시민권에 준 하는 제도 신설
- * 사실혼에 있으며,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국내 혼인신고 허가로 이산가족 만들지 않기
- *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풍토 마련을 위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들의 교과서 수록. 제도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 * 이주여성들의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후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 복지적인 서비스 마련

5. 별첨

- # 탄원서 1, 2, 3 (안양 NE-CO Family)
- # 법무부 답변서

건의서

지난 4년간 부산·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본 단체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국제결혼 가족들의 상담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한국이 점차 세계화 되어가면서 국제결혼이 그리 생소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에 결혼한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처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개별적이기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상담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 국제 결혼한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

1. F1(방문동거)비자의 문제점 : 가장(家長)의 취업금지과 짧은 비자기간

현재 국제 결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은 F1-방문동거비자-입니다. 이름처럼 F1 비자는 방문과 동거는 허용하지만, 그 외 취업이나 다른 권리행사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충분히 짐작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F1비자는 최장 6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결혼 가족들의 경우 처음 입국 시 3개월간 체류를 허용받아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3개월에 한번씩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불안정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국적법이 개정된 98년부터 배우자에게 1년간의 F1비자를 주기 시작했으나, 역시 갱신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비자연장을 위한 절차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존재합니다.

2. 관련 행정기관의 인식부족의 문제

첨부된 탄원서를 읽어 보시면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되지만, 국제결혼을 한 한국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수모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법체류상태로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미 자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또 자녀를 가진 상태라면 자국민의 가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그런 사람과 사느냐 당장 헤어져라”, “왜 아무 대책 없이 아이를 낳았느냐”, “불법체류자는 자식이 사망해도 다시 오기 쉽지 않으니 포기하라”는 등 관련공무원(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상식 이하의 발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뿐 아니라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남녀평등사상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식 없이 내뱉은 공무원들의 언사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준 상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쉽게 아물기 어려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3. 불법체류상태의 사실혼 부부의 문제

한국에 동남아시아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여성들간에 사랑과 그 결실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 여성과 가정을 꾸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될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재입국 규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 권리가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탄원서 중 강순옥씨의 경우처럼 합법적인 혼인절차를 다 마치고도 남편이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2년 이상을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나, 김외자씨의 경우처럼 온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국민과 결혼이 인정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미국과 같이 국민에게 최대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국민과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비록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추방이라는 비인도적인 조치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특별체류비자’를 주는 일본정부의 정책은 충분히 고려됨직 하다고 봅니다. 지난 날 미국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이 적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나. 건의사항

1.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F2(거주)비자가 주어지도록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중 F1(방문동거)비자에 비해 F2(거주)비자는 취업과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당장 국적 취득은 그리 쉽지 않고 또 자신의 국적을 바꾸고 싶지 않은 배우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족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취업과 재산권이 인정되는 F2비자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 불법체류 상태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국민과 가정을 꾸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집계내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 인권모임에 결혼과 생활의 문제로 상담중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위장결혼이거나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적절한 혼인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특별체류비자’와 같은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3. 귀화요건의 현실화를 바랍니다.

현재 귀화의 조건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결혼한 후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거가 있는 경우 귀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화신청이후 시험과 면접 등의 절차를 밟아 귀화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귀화사례를 보면, 귀화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 가정들이 한국에 뿌리내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라고 보입니다. 모쪼록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국제결혼 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4. 관계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오로지 행정 처리수준의 답변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결혼한 한국여성 대부분이 지적하는 바, 관계공무원들이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을 비하하거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것에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바로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인식의 전환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각의 가족들은 책 한 권을 내고도 남을만한 사연들을 안고 있지만, 간략한 탄원서들을 첨부합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과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탄 원 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부산 초량에서 살고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와 제 남편 심동 씨 사이엔 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3세 된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벌써 저희 남편이 한국에 입국한지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C3 3개월 VISA로 들어 왔으나, 부산으로 일부러 이사를 하고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지금은 F1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F2 VISA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그 VISA를 얻을 수 있는지 발이 닿도록 뛰어 다녔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보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시리라 믿기에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글을 연결할까 합니다.

전 결혼 전 타이완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대륙 선교에 관심이 많아 중국 땅을 밟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서른이 넘어 결혼을 하고 지금의 아들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임신 9개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아이를 낳은 후로 하루하루 하늘만 바라 보며 이곳저곳을 분주히 헤메며 다녀야 했습니다. 낳은 지 한 달도 안된 아이를 안고 남편이 오기 전까지 출입국이며, 동사무소, 구청, 시청...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때의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투성이의 그 자체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애 아빠를 기다리며 마치 꽃감꼭지에서 꽃감을 빼먹듯, 줄어만 가는 은행 잔고를 보며 혹시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친정에 의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입국하기 전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출산한 그들에게 비취진 저의 모습은 오히려 제가 바라보기 힘들 거란 생각 때문에 더 견뎌보리라 다짐하던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몸부림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간절히 손을 모으던 그 시간들...

산모가 잘 먹고 잘 쉬어야 양질의 젖을 아이에게 물릴 수 있으려면 가슴엔 가시에 찢린 듯 이품만 싸안히 쌓여가던 그 시간들 안에서 내 몸은 부숴질 지라도 오직 내 아이만은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간절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떨리한 채 정부의 높은 문턱들을 올라서기 시작했건만 남편이 외국인인 관계로 외국인의 처를 위한,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법은 해당사항이 없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때는 바야흐로 IMF시기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던지라 나의 간절한 바램엔, 더욱더 외국인에게까지 도움을 줄 여력이 없다는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홀로 독립인지 소외인지를 만들어 내며, 제 삶 안에서 남세 의무에 결코 기만하지 않았음

을 기억했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산 것도 아니련만, 대한민국 국적을 버젓이 갖고 있는 나에게 남편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젓먹이와 산모를 살얼음판으로 내모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곧 이는 인권·성별·사회적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당연히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에야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도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항구적 권리일 것이며, 이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에야만 합니다. 제가 겪었던 악몽같은 일들은 '외국인인 남편'이라는 이유로부터의 첫 번째 겪는 차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겪게 된 출입국으로부터의 차별입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채 곧 다시 한국에서 만날 줄만 알았던 잠시 이별은 약 8개월만에야 기가 딱 막힌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3개월 동안만 처자식과의 동거를 허락한다는 C3 VISA, 그것도 인천출입국에서 발이 닿도록 다니는 것이 너무 딱해 국제적인 인권주의 입장에서 내어주는 어쩔 수 없는 연민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C3를 F1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해서 부산에 있는 언니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무작정 남편을 위해 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시간은 왜 그리도 그 때 따라 갈만 가는지 3개월이 거의 다 될 무렵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불법체류를 해야 하나? 들어갔다 영영 못나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초조... 칼끝에선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F1변경 허가 과정 중의 한 관례로 출입국 조사과에서 김진용이라는 분이 출두했습니다. 그 분은 업무 적인 것 외 많은 질문을 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인양 죄수를 다루듯 질문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김진용이라는 분의 조사 스타일에 대해, 국제결혼 커플팀으로부터 이미 전해 들은 바가 있어 도를 닦듯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을 하며 참으려 애를 썼지만 그는 끝내 언니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결혼을 하는데 보호자가 되어 가지고 허락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도 private 질문이었는데, 언니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 말은 두 사람 헤어지라는 말로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순간, 내 안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가 남편에게 변경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추방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감수해야지. 참자... 그 분이 다녀간 뒤로 저희 집엔 마치 별집을 쫓겨놓은 것 마냥 이수라장이 외었습니다. 한동안...

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한 숨도 취침을 취할 수 없었고 꼭두새벽 준비를 해서 우리 가족은 출입국 조사과로 향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나의 발언으로 남편이 강제

추방당한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영 못 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남편 내 아이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조사과 직원의 윗 상사를 만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고발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도 편하진 않았을까? 문을 열자마자 그가 먼저 보였습니다. 단 어제와 아주 다른 기부스를 짝 뺀 모습이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보여진 두 개의 얼굴에서 그만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래 참자. 그냥 조용히 주의만 주고 나가자. 저분도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를 잘 몰라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야. 우리 가정의 힘찬 출발을 위해 참자. 그냥 조용히 주의만 주고 나가자"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에 그는 공적인 업무 이외의 질문은 그냥 참고 삼아 던진 사항이었다고 해명할 뿐, 자신을 합리화시킬 뿐... 미안하다는 투의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 마냥...

2층에 불일이 있어 관리과에 들르니 김혜자씨라는 여성분 -지금은 김해 공항에 근무중임-이 반가이 맞으며 조사과의 김진용씨 아주 신사로 소문나 있다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분은 오히려 저를 달래며 조사과에서 왜 조사를 하는지 열람된 문서철을 보여주었고, 며칠 후에 우리의 조사된 서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분은 열심히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듯 협박조의 발설을 아끼지 않았으며 공들여 받아 적더니만 그가 만든 문서엔 나의 발언들이 틀린 철자를 통해 전혀 다른 문장을 만들어 내었으며 하지도 않은 말이 그가 이해한대로 짜 맞추다보니 가문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남편은 곧 사회의 최하위층 신분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악몽의 시간들은 지나갔고, F1 변경허가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남편이 출국할 일도 없고 가족과 헤어져 살 일도 없고, 모여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만든 조서는 보잘 것 없는 종이 꾸러미에 지나지 않는 거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도 너무 궁금합니다.

첫째, F1비자는 법규상 6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6개월 or 1년씩밖에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가정의 심리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출입국의 권한에 속하나요?

둘째, 연장할 때마다 출입국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뜬말 들일 뿐, 부담만 잔뜩 뒀을 뿐 아직 한번도 재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옛 김진용씨와의 문제로 친정 식구들과 등을 지고 살 뻔했던지라 두려워서 왜 다시 조사과의 조사가 필요합니까? 다 끝난 조사 아닙니까? 라고 문의했으나 위장결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부부에게 위장결혼이 웬 말인지? 그럼 내 아들은 잠시 조사를 받기 위해 빌려온 앵벌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지... 출입국을 다니다 보면 정말 위장결혼 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산 다

른 시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위장결혼을 한 그들에게 법안은 너무 관대합니다. 법적으로 그 여인들은 한국 남성과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해서 정작 위장결혼 남성과 결별해 각자 살고 있어도 브로커, 위장결혼 운운하며 그들을 문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저희 같은 부부에게는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라 가라 너무 귀찮게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제가 호주인지라 이력서를 쓴다던가 하면 미혼모 or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남편의 일로 출입국의 왕래가 잦을 땐 남편의 나라로 돌아가 살 것을 종용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 누려할 할 권리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결혼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헌법상의 평등조항이란 뭘 말하는지요?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일컫는 것이 아닌지요?

제 37조 2항에 법률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입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때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묘한 느낌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건 내 안의 화, 분노일 것입니다. 나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헌법이 규제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의 생각과 느낌들을 특정인과 공유하며, 아름다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남성과 위장결혼한 외국여성에게만 관대하면서 정작 관대하여야 할 저에게는 그들은 무슨 권한으로 양파껍질 벗기듯 절 발가벗기려 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불평등입니다 전 현재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공평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남편들 중, 대다수의 한족들은 많은 수모를 견디지 못한 채 부인과 함께 쫓지가 빠져라고 도망치듯 내뺄버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반복하던, 힘들어하는 모습은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하 5년 정도는 한국에서 살길 원합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와 환경이 그의 가슴속의 응어리들을 말끔히 치유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곧 서로를 잘 이해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며, 다시 내가 받은 것을 사회로 환원해 줄 수 있는 힘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발 사는 동안이나마 제 남편이 편하게 다리를 쭉 뻗으며 살 수 있도록 외국인의 묵인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전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받는 한 달 급여로는 너무 벅차 사랑하는 아들을 중국에 보낸 지 몇 달 됐습니다. 가까운 대만, 홍콩, 일본을 보아도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우리만큼 낙후되진 않았습니. 이런 걸 생각하면 때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국제화, 국제화 부르짖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정책을 쓸 것입니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자이기 때문에 참으며 살아야만 합니까? 너무 힘겹습니다. 부디 약한 자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001년 1월 29일 자정에

김미영 드림

PS. 글이 너무 엉망입니다.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양해하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 원 서

법무부 장관님전상서

그 동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전영수, 김외자 부부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펜을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남편 전영수씨는 2000년 8월 27일 입국을 하여 지금 합법적인 체류는 하고 있으나, F1 비자를 받은 저들은 법으로 취업을 금지한 우리 나라 국법 참으로 아이들을 두 명을 둔 저로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다만 남편이 합법적인 체류다 보니 불안에 떠는 것은 없지만 한편 요즈음처럼 어려운 불경기에 제가 혼자 벌이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월 자진출두를 위하여 불법체류 중인 남편과 함께 수속을 하면서 일도 못하고 그에 대한 경비... 중국 가서도 시간이 너무 걸리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월 27일 출국을 하여 8월 27일 입국을 하다보니 중국에서 많은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지금 남편의 국적도 빨리 바뀌면 취업문제도 해결되련만 지금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젠 큰애(한용)이 곧 학교 갈 때가 되 가고 아이 두 명 모두 저의 母姓을 따르니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장관님 대한민국 국적법을 보면 2년 이상 한국인과 동거나 합법적인 체류하면 누구나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그에 대한 조건 및 경제적 담보라든가, 재산권, 하여튼 신청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수씨 국적이 바뀌면 애들 성도 자동으로 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시간도 많이 끌었지만 저의 남편 불법이라는 이유로 95-98, 부산 법무부 중국 국적계이름 성도 모르는 법무부 직원 민원으로서 전화를 하면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하고, 왜 만났느냐 포기해라는 등... 그러면 법적으로 금지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민주주의 법무부 직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입국 문제로 논의하면 앞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한번 불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쾌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그랬고, 저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불법체류인 2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호적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무부 쪽으로 알아 보려하면 법무부 쪽에서는 왜 임신을 했냐는 식으로 답을 주고 했어요. 남편도 돈벌러 다니려 했지만 그 당시 검문도 좀 많았고, 또한 임금 못 받아도 어디에다 이야기 못하고 한번은 횡단보도에서 파란등 신호에 통과하는 저희 남편이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에 다쳤는데 병원 검사결과 타박상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당시 의료보험도 안돼서 배로 들어가는 병원비...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낫아 졌지만 특히 부산 인권모임 대표 정귀순님을 만난 뒤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불경기 속에 겪고 있는 저희들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하루 속히 취업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위에서 알림 바와 같이 귀화문제, 국적 취득 후 아이들 姓문제, 취업문제, 꼭 답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질서 없는 필을 놓습니다.

2001. 1. 15

전영수, 김외자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1장식 동봉합니다.

부산시 북구 덕천2동 292-13번지 6통 3반

Tel : 051-338-7975

탄 원 서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부산에 거주하는 김용수, 황형민 부부입니다. 99년 5월에 중국으로 들어가 11개월만에 결혼절차를 마치고 2000년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함께 머물며 북경에서 여덟 번식이나 서류 문제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렵사리 서류가 되어 현재 저희들 이렇게 한국 땅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니 마땅히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어디에도 취직이 되질 않으니, 생활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월이면 1년이 됩니다. F1비자여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씩 겨우겨우 연장하며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없으니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여자 몸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벽찰 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 꾸려 사는 게 그저 바램인데 이런 것조차 현재는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F1비자로는 일할 수도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져서 귀하시험을 봐서 국적취득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 마음 편히 살고 싶고 직장도 올바르게 구해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가올 앞으로의 현실은 다 부딪쳐야 할 문제인데 저희 앞에 주어진 여건은 아무런 힘도 희망도 돼주질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글귀 올립니다. 두루 가정 행복하시고요. 모든 일 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저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이 땅에서 보탬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황형민 올림

탄 원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진구 당감 1동 292-39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순옥입니다. 다름 아닌 저는 현재 중국남자(조선족)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서 6년 가까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7년도에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 출국을 당하고 그 뒤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국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갔습니다. 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불법으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2년 입국 금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사정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2년이 지난 후 출입국 관리소에 가보니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또 하였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법에라도 호소를 하려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탄원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입국허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입국을 하게 될 때는 법을 어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연장을 두 번 받은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많은 벽이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F1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해도 땀땀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1비자로 취업을 하는 것은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라 마음을 조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다시 거듭나려고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땀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생활은 극히 윤택한 생활은 안된지 몰라도 남들 그렇게 살아가듯이 저희들도 신뢰와 믿음으로 두 사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F1비자가 취업제약을 하고 있으니 취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F1비자로도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답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린 여기 대한민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F1비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국적 취득에도 벽을 좀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어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한 여자와 한남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정말 거듭나게 살아가려 하는데 법적인 난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순옥드림

제 목 : 건의회신

1. 2001. 2. 9 법무부에 접수된 귀하의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1998년 6.14 시행된 신 국적법은 국적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관하여 오랜 기간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된 것으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국내 거주기간,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한국사임인자의 자격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국내 거주요건과 관련해서 구 국적법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에 대하여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었으나 신 국적법은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혼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순히 한국인과 동거한다거나 혹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도외시한 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앞으로 국적법 개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참고로, 국내 체류 및 그 자격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소관부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므로 귀하의 건의서를 시본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한 같은 내용의 건의서도 법무부에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

시행일자 : 2001.02.15

발 신 : 체류 심사과

수 신 : 정귀순

제 목 : 민원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경유하여 2001.2.13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여 건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거주 자격(F-2) 부여

o F-2(거주) 자격은 제한 화교 같이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일정기간 이상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비록 제한적이거나 점진적으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처우

o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합법적인 혼인절차(사실혼 관계는 불인정)를 마친 후 자진 출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적법한 절차로 방문동거(F-1)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o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로 일정기간 입국규제조치되거나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감면 및 입국규제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F-1(방문 동거)자격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방문 동거(F-1)자격은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제결혼가정의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활동범위에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으며 드리는 탄원서 I

김대중 대통령께 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12월 18일은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이 저희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을 총회에서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비록 이 협약이 한국정부가 비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조약이 유엔에서 만들어진 이상 저희를 위하여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그와 같은 권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이 해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탄원을 드립니다.

네팔 노동자로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의 문화습관에도 익숙하여 거의 한국이 제2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을 만나 사랑한 까닭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인 실업자들도 많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97년 IMF상황에서도 경험했듯이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떠난 일자리에 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린 저희들은 한국인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장기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체류의 불안함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러 고국인 네팔에 갈 수 없어 아이를 낳고 살아도 체류비자를 얻지 못하며 살고 있어 언제 강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위하여 출국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 임시비자를 받으러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생활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엄마호적에 올라 아빠 없는 미혼모의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이상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합니다.

- 결혼을 하였을 경우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거주비자(F-2)를 발급해 주십시오
 - UN 조약을 비준하시어 전세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주십시오
- 이상의 저희들의 바람을 담아 온 영혼으로 호소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미등록네팔이주노동자일동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드리는 탄원서 II

김대중 대통령께 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12월 18일은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이 저희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을 총회에서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비록 이 협약이 한국정부가 비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조약이 유엔에서 만들어진 이상 저희를 위하여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협약의 모든 권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이 해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탄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네팔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한국여성과 사랑을 하여 결혼하였고 이제는 아이들도 자라고 있으며 저희들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정을 갖고 살기에는 몇 가지 이루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직접 탄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고국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저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방문하여 임시 동거할 수 있는 비자(F-1)를 발급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이 비자로는 저희들이 노동을 할 수 없어 가정이 불안정하며 일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져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직'이라는 외국인 등록증을 내밀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습니다. 안정되게 한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려 저희 조국네팔에도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 때문입니다. 저희는 '불법체류자'로 일하다 체류비자를 간신히 얻고 보니 또다시 '불법취업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불법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여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을 들어주시시오

- F-1비자를 F-2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UN 조약을 비준하시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보호받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소박한 바람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200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F-1비자로 살아가는 네팔인 일동 드림

세계인권의 날을 지내며,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으며 드리는 탄원서 III

대통령께드립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국인 인권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인으로서 네팔남성과 결혼하여 현재 함께 모여 저희들의 고충을 이야기 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는 여성들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중의 네팔인을 만나 결혼하여 살게된 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탄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의 체류 허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는 달리 외국인인 남편들은 거주비자(F-2)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남녀 차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불평등을 대통령께서 원하실 리 없다고 봅니다. 남성들은 외국인과 가정을 꾸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여성들은 어찌하여 가족이 헤어져야하고 남편이 일을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희는 남편이 불안하게 몰래 일하면서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든 임시비자가 있든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할 경우도 법을 어기는 것이요, 체류비자 없이 일하고 있어도 불법인 것을 언제까지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요. 물론 나라전체를 생각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회의 가장 약자인 저희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우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주시시오
- 불법체류하고 있는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시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F-1 비자를 F-2로 전환해 주십시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UN 협약을 비준하여 주십시오

국민 한사람이라도 불평등한 법률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이 소박한 소망을 꼭 이루어주시리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아빠가, 저희의 남편이 불법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불안감을 아이들과 저희들 또한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200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네팔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들 드림

이주노동자의 날을 지내며 드리는 탄원서 IV

대통령께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살아오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간직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기도 드리면서 성탄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현상중의 하나가 국내인과의 결혼입니다. 저는 특히 네팔노동자들과 결혼한 가족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만나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문제도 의논하고 특히 혼인신고나 비자연장 혹은 불법체류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아이들도 이 모임의 주인공들입니다. 22가정이 회원으로 있는 '네팔-코리아'모임은 내년 봄 합동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식을 올리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 가정을 위하여 혼인식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되어 엄마는 미혼모가 됩니다.
-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늘 강제추방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족 전체의 건강, 특히 심리적인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 한국인으로서 네팔 남자와 결혼한 것만 다른데 이들 남편에게는 시민권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여기가 내 나라인가' 하는 실망감과 분노가 여성들에게 가득합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자들은 안정하게 가정을 형성할 수 있어 명백하게 '남녀'차별(거주비자인 F-2를 외국인 여성들은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 남성들 특히 불법체류하였던 이들은 받을 수 없음, 현재 F-1 비자만이 허용되고 있어 무직의 상태로 살아야 함)을 여성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남성중심으로 법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배우자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팔 노동자들은 긴 시간의 노동과 직장 내 차별이 있다하더라도 가족들과 같이 살며 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 비자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 내에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등해야 할 남녀의 권리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위한 UN협약'을 비준하여 주십시오. 아직 미발효되고 있는 이 조약은 명실상부한 이주노동자 관련 가장 포괄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인 여성의 남편인 이주노동자들에게 F-2 비자를 발급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이 노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인으로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성이기에 차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여성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그 배우자가 누구이든 사랑을 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를 누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가 누구이든 국가와 인종에 관계없이 온전한 존재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 한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록 단 한 가정이라도 정의롭지 못한 제도에 의해 희생당한다면 이는 분명 바로 고쳐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한 가정의 작은 평화가 모여져서 나라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이라 봅니다.

불안한 이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이 땅의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안양전.진.상 복지관장 이금연 드림

위의 탄원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법무부 답변서 (2001년 1월 10일)

문서번호 (체류61530-13)

수 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676-136 안양 전·진·상 복지관장 이금연 귀하

제 목 : 민원 회신

1.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2001.1.8 우리부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거주자격 부여 등 법적 지위 보장 요청」으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과다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주자격(F-2)은 제한 화교와 같이 오랜 역사적 특수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거주자격(F-2)부여문제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혼인문화제도가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추진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 특별히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이주 . 여성인권연대를 발족하며

I. 취지

지난 날 근대화 과정에서 독일과 중동지역에 노동자를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이 90년대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뿐 아니라,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기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점차 늘어나면서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행복하게 함께 살 권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이 한층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거주권의 문제와 함께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주와 여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그 권리가 인정되고 또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II. 목적

1.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지원한다.
3. 국제결혼가족 및 그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한다.

III. 활동 범위

1.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
2.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 활동
3.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

IV. 2001년 사업

1.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2.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3. 정책워크숍
 - 2001년 3월 제1회 정책워크숍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 2001년 9월 제2회 정책워크숍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문제와 대책"

4. 실태조사와 자료집 발간(연1회)
5. UN 조약 비준 및 감사활동
6. 전문 지원그룹 조직
7. 관계기관과 정책 간담회 개최
8. 국제 연대활동

이주·여성인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 이주여성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연락처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금연관장

☎031-449-2876 / 팩스 031-446-2876

e-mail afi21@hanmail.net

대구·경북지역 : 구미 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사무처장

☎054-455-2816 / 팩스 054-452-6929

e-mail kc2314@chollian.net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대표

☎051-802-3438 / 팩스 051-803-9630

e-mail noja@kornet.net

♣ 연락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위의 각 지역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이주·여성 인권 연대

문서번호 : 이주여성 2001 - 1

시행일자 : 2001년 3월 28일

발 신 : 이주·여성 인권 연대

수 신 : 법무부 외국인노동자인권대책위원회

제 목 :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의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귀 기관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본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늘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향적인 정책실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 정책워크숍 자료집 1권)

1.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은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입국 규제조항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질 것이 두려워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혼인신고 및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2. 어렵사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간의 가족, 특히 이주노동자를 배우자로 맞은 한국인 여성간의 가족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단지 방문과 동거만 허용되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F1비자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하여 국민의 '부(夫)'에게도 F-2 비자 발급하거나, 시민권에 준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 후 언어와 관습 등 한국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고통 뿐 아니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 서비스 마련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4. 국제결혼한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풍토 마련을 위하여 국제 인권 조약의 교과서 수록 및 제도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방안 등 국제결혼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이주·여성 인권 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금연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모경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 이주여성 인권침해 신고 센터 ♣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031-449-2876.443-2876
 팩스 031-446-2876 / e-mail afi21@hanmail.net
 대구·경북지역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455-2816
 팩스 054-452-6929 / e-mail kc2314@chollian.net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051-802-3438
 팩스 051-803-9630 / e-mail noja@kornet.net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이주·여성 인권 연대

문서번호 : 이주여성 2001 - 1
 시행일자 : 2001년 3월 28일
 발 신 : 이주·여성 인권 연대
 수 신 : 민주당 김중권대표
 참 조 : 인권위원장
 제 목 :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의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귀 기관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본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늘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향적인 정책실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 정책워크숍 자료집 1권)

1.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은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입국 규제조항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질 것이 두려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혼인신고 및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2. 어렵사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간의 가족, 특히 이주노동자를 배우자로 맞은 한국인 여성간의 가족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단지 방문과 동거만 허용되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F1비자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하여 국민의 '부(夫)'에게도 F-2 비자 발급하거나, 시민권에 준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 후 언어와 관습 등 한국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고통 뿐 아니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 서비스 마련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4. 국제결혼한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풍토 마련을 위하여 국제 인권 조약의 교과서 수록 및 제도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방안 등 국제결혼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이주·여성 인권 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금연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모경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 이주여성 인권침해 신고 센터 ♣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031-449-2876.443-2876
 팩스 031-446-2876 / e-mail afi21@hanmail.net
 대구·경북지역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455-2816
 팩스 054-452-6929 / e-mail kc2314@chollian.net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051-802-3438
 팩스 051-803-9630 / e-mail noja@kornet.net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이주·여성 인권 연대

문서번호 : 이주여성 2001 - 1
 시행일자 : 2001년 3월 28일
 발 신 : 이주·여성 인권 연대
 수 신 : 엠네스타 국제그룹 대표
 제 목 :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의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귀 기관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본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늘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향적인 정책실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 정책워크숍 자료집 1권)

1.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은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입국 규제조항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질 것이 두려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혼인신고 및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2. 어렵사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간의 가족, 특히 이주노동자를 배우자로 맞은 한국인 여성간의 가족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단지 방문과 동거

만 허용되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F1비자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하여 국민의 '부(夫)'에게도 F-2 비자 발급하거나, 시민권에 준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 후 언어와 관습 등 한국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고통 뿐 아니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 서비스 마련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4. 국제결혼한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풍토 마련을 위하여 국제 인권 조약의 교과서 수록 및 제도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방안 등 국제결혼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이주·여성 인권 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금연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모경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 이주여성 인권침해 신고 센터 ♣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031-449-2876.443-2876

팩스 031-446-2876 / e-mail afi21@hanmail.net

대구·경북지역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455-2816

팩스 054-452-6929 / e-mail kc2314@chollian.net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051-802-3438

팩스 051-803-9630 / e-mail noja@kornet.net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체결일자 및 장소 : 1965년 12월 21일 뉴욕에서 채택

발효일 : 1969년 01월 04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발효일 : 1979년 01월 04일 (조약 제667호)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4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본 협약의 체결국은,

국제연합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중의 하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든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 서든 이론상으로는나 실제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 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중요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재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포용된 제반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 시일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결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결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체결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각 체결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b) 각 체결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c) 각 체결국은 어디에 존재하든간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 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d) 각 체결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e) 각 체결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지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2. 체결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체약국은 특히 인종분리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그들 관할권내의 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관행을 방지, 금지 및 근절시킬 의무를 진다.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중요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결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

여 특히 계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계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 a)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b)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 c)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 d) 기타의 민권 특히
 - (i) 당해 계약국 국경이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i)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 (iii) 국적 취득권
 - (iv)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 (v)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 (vi) 상속권
 - (vi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vi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x)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등에 대한 권리
 - (ii)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iii) 주거에 대한 권리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v)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vi)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계약국은 권한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제7조

계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부]

제8조

1.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계약국이 자국 국민중에서 선정한 덕망이 높고 공평성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집무하며, 이들의 선정에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 형태를 대표하도록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계약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단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계약국은 자국 국민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3. 제1차 선출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후에 실시된다. 최소한 선출일 3개월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계약국에 서한을 송부, 계약국들로 하여금 2개월이내에 후보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계약국명을 명기, 피지명된 전후보자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하여 동 명부를 계약국에게 제시한다.
4. 동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계약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계약국의 2/3가 정족수를 이루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계약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얻는 후보자가 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된다.

5. (a) 이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제1차 선출에서 선출된 위원중 9명의 임기는 2년만에 만료된다. 이 위원 9명의 성명은 제1차 위원 선출 직후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으로 선택한다.

(b) 부정기적인 공석의 충원에 있어서 자국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당해 체약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국 국민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6. 체약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의 비용을 책임진다.

제9조

1. 체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의 발효후 1년 이내

(b) 그후 매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 위원회는 체약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며, 체약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서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는 체약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총회에 보고된다.

제10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마련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다.

제11조

1. 체약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타 체약국이 있다고 간주할 때는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실을 당해 체약국에 전달한다. 3개월 이내에 당해 체약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된 해명서 또는 성명서와 더불어 동국이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만약 이 문제를 당해 국가에서 1차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쌍무 교섭이나 또는 양자에게 가능한 다른 절차중 어느 한 수단에 의하여 양측에 동등히 납득되도록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중 어느 일방은 위원회와 상대방 국가에 통고함으로써 위원회에 재차 이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가 취하여져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본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자신에게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해 체약국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언급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문제가 심의되는 동안 대표를 파견하여 투표권없이 위원회의 의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1. (a) 위원회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후에 위원장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정위원단(이후 "위원단"이라 함)을 임명한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일 수도 있으며 또 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분쟁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위원단의 주선은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b)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단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지 못한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2/3 다수표로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된다.

2. 위원단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집무한다. 이들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 협약의 비체약국 국민이 되어서도 안된다.

3. 위원단은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위원단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단이 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5. 이 협약 제10조3항에 따라 마련된 사무국은 체약국간 분쟁으로 인하여 위원단이 구성될 때 동 위원단의 사무국으로 이용된다.

6.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계에 따라 위원단 구성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단 구성원의 경비를 본조6항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쟁에 대한 체약국이 지급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8. 위원회가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정보는 위원단에서 이용 가능하며 위원단은 당해 체약국에게 기타 관련정보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1. 위원단은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였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간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모든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와 분쟁의 호의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내포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단의 보고서는 분쟁에 관련된 각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이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단의 보고서에 내포된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3. 본조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단의 의장은 위원회의 보고서와 당해 체약국의 선언을 이 협약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다.

3. 본조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선언은 어느 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 등본은 내용이 공표 되지 않는다는 양해 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협의를 받고 있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청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보고서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약국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제15조

1. 1960년 12월 14일자 총회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제국 및 민족의 독립허용에 관한 선언의 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타 국제기관이나 또는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이 민족들에게 허용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a) 이 협약 제8조1항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국제연합소속기관으로부터의 청원의 사본을 접수하고 또한 동 기관에 이러한 청원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과 권고를 제출한다. 여기의 국제연합소속기관은 자신 앞에 회부되어 있고 이 협약에 포괄된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및 비자치영역과 모든 기타 영역의 주민들로부터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취급한다.

(b) 위원회는 본항(a)에 언급된 영역내에서 행정권에 의해 적용되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

3. 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보고서속에 국제연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청원과 보고서의 개요를 포함시키고 또한 동 청원과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명시적인 의견과 권고를 포함시킨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사무총장으로부터 이 협약의 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본조2항(a)에 언급된 영역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요청한다.

제16조

분쟁이나 이외의 해결에 관한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조직 범규속이나 또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협약속에 규정된 차별에 관련된 분쟁이나 또는 이의를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침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또한 체약국이 자기들 사이에 유효한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채택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3부]

제1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를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1. 이 협약은 협약 제17조1항에 언급된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이 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비준이나 또는 가입시 당사국이 행한 유보를 접수하여 이 협약의 기존 체약국이나 또는 체약국이 되는 모든 국가에 회람한다. 이러한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동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2. 이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용납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효력을 가진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협약의 체약국중 2/3가 유보를 반대할 경우 동 유보는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철회는 그 뜻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체약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후에 발생한다.

제22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또는 적용에 대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 분쟁이 교섭이나 또는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이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토록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체약국이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이러한 개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4조

-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 제17조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7조 및 제18조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9조하의 이 협정 발효일
 - (c) 제14조, 20조 및 23조하의 접수된 통보 및 선언
 - (d) 제21조하의 폐기

제25조

1. 이 협약의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이 협약은 국제연합 문서 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협약 제17조1항에 언급된 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체결일자 및 장소 : 1979년 12월 18일 뉴욕에서 채택

발효일 : 1981년 09월 03일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회동의일 : 1984년 12월 18일

비준서 기탁일 : 1984년 12월 27일

발효일 : 1985년 1월 26일 (조약 제855호)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7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도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고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의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 3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부]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 기구에서의 피선거권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부]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 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4부]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증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부]

제 17 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6부]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 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